

2022년도 제5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2. 4. 14.(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45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04건(안전번호 제2022-20075호 ~20378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2-20075호~20076호는 ★★★★★ 블로그에 각 증권사의 주식 관련 보고서를 도용 및 표절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전송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점, 이를 통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는 점, 저작물을 무단으로 수정하여 저작인격권 침해의 소지 또한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2-20077호는 ♪♪♪ 블로그에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복제물 임베디드 링크를 게시한 사안으로,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로를 게시 중인 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어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2-20078호~20086호는 ♪♪♪ 블로그 및 웹하드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이 신고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

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다만 안전번호 제2022-20078호~20079호는 이미 삭제되어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2-20087호~20304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전 게시물 370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2-20305호~20378호는 긴급대응저작물 신속심의 요청에 따라 추가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전 게시물 100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53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2-4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시정권고 심의안건은 24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723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 및 경고의 시정권고 심의임. 안전번호는 제2022-20075호~20378호이며,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2-20075호~20076호는 민원인(실명 1명)이 신고한 건으로¹⁾, ★★★★★ 블로그에 각 증권사의 주식 관련 보고서를 도용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는 '○○○○○○○○' 및 '▣▣▣▣▣▣▣'에서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본인의 표현법으로 일부 수정하여 본인이 작성한

1) 민원인은 2022.4.4. 신고하였고 보호원은 2022.4.8. 관련 자료를 심의시스템에 등록함.

글처럼 게시하고 있음. 민원인은 각 보고서의 원본을 함께 제출하였음.

(안전번호 제2022-20075호~20076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두 안전은 같은 블로그의 같은 게시자의 글임. 게시자는 ★★★★★에서 주식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음. 광고를 삽입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전송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점, 이를 통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는 점, 저작물을 무단으로 수정하여 저작인격권 침해의 소지 또한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어문 저작물의 허락 없는 이용 사안임. 우리 분과위원회는 처음 심의하는 사안이나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유사한 사례가 소개되었음.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 C 위원: 민원인이 표절이라는 취지로 신고한 것인지, 무단복제 취지로 원본과 블로그 글의 비교표까지 직접 작성하여 신고한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민원인은 도용 사실에 대한 기재와 원저작물을 제출하며 신고하였고, 도용 부분 및 정도를 설명하는 비교표는 시정권고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에서 작성하였음.

- E 위원: 민원인이 증권사 관계자인지 또는 저작자인지 여부는 확인되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민원인이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음.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권가 레포트는 저희 시정권고 심의로는 처음 접수되었으나 무단복제 및 도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왔음. 일반적으로 이러한 성격의 글은 반드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 보기는 어렵고,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인 인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나, 금번 사안은 어미 정도만 수정하였을 뿐 내용상 원본을 그대로 복제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은 가결의견으로 검토해 주었음.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2-20075호~20076호에 대해 의결해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동의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2-20075호~20076호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전송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를 통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는 점, 저작물을 무단으로 변형, 수정하여 저작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2-20077호는 민원인(실명 1명)이 신고한 건임2).

(안전번호 제2022-20077호의 채증자료를 제시하면서) ♀♀♀ 블로그에 일본 애니메이션 ‘◆◆◆◆ ◆◆◆ ◆’의 해외 서버 불법복제물을 임베디드 링크로 게시한 사안임. 후속편의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도 함께 게시되어 있었으나,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은 게시자에 의해 삭제된 상태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로를 게시 중인 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어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의원: 링크가 포함된 게시물 전체가 삭제된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심의일 현재 게시물 자체가 삭제되어 있음. 해당 블로그에서 불법복제물을 삭제했다는 내용의 공지 또한 확인할 수 있음(해당 공지 게시물을 제시함). 이후 제시할 안전번호 제

2) 민원인들은 2022.4.3. 신고하였고 보호원은 2022.4.8. 관련 자료를 심의시스템에 등록함.

2022-20079호도 같은 게시자의 게시물로, 최근 여러 번 불법복제물로 인한 제재를 받으며 일괄 삭제한 것으로 보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게시글이 이미 삭제되었기에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자는 의견으로 검토가 되었음.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2-2007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동의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2-20077호는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은 인정되나, 심의대상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2-20078호~20086호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건으로, 안전번호 제2022-20078호~20083호는 민원인(실명 2인)이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하였고³⁾, 안전번호 제2022-20084호~20086호는 민원인(실명 1인, 익명 1인)이 신고하였음⁴⁾. ♀♀♀ 블로그 및 웹하드 등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22-20079호의 채증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2-20079호의 게시물은 앞서 살펴본 안전번호 제2022-20077호와 동

3) 민원인들은 2022.3.24., 4.3.~4.4., 4.8. 신고하였고 보호원은 2022.4.8. 관련 자료를 심의시스템에 등록함.

4) 민원인들은 2022.3.30.~3.31. 신고하였고 보호원은 2022.4.8. 관련 자료를 심의시스템에 등록함.

일한 블로그, 동일한 게시자의 게시물이며 역시 이미 삭제된 상태임.
제2022-20078호의 게시물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삭제된 상태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안전번호 제2022-20080호~20086호에 대해서
는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의견으로 검토하
였고, 안전번호 제2022-20078호~20079호는 이미 삭제되어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복제·전송자에 대
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
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
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2-20078
호~2008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안전번호 제2022-20078
호~20079호는 이미 삭제된 게시물이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자
는 의견이고, 제2022-20080호~20086호는 삭제 및 전송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자는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이견
없음.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2-20078호~20086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
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를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안전번호 제2022-20078호~20079호의 경우 이미 삭제되어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20080호~20086호의 경우 삭제 및 전송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2-20087호~20304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안전번호 제2022-20305호~20378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만화, 음악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전은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중점](영화)드라이브 마이 카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2-20106호는 웹하드에서 '[중점](영화)드라이브 마이 카 (2021)'를 110포인트에 제공 중임. 2021. 12. 23. 개봉한 일본 영화로 시리즈온에서 5,000원에 서비스 중임.

(영화 '[중점](영화)더 배트맨 (202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2-20142호는 웹하드에서 '[중점](영화)더 배트맨 (2022)'를 160포인트에 제공 중임. 2022. 3. 1. 개봉한 미국 영화로 시리즈온에서 16,400원에 서비스 중임.

(영화 '[중점](영화)킹 리차드 (202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2-20154호는 웹하드에서 '[중점](영화)킹 리차드 (2022)'를 380포인트에 제공 중임. 2022. 3. 24. 개봉한 미국 영화로 현재 상영 중임.

(안전번호 제2022-20142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중점](영화)더 배트맨 (2022)'의 불법복제 영상을 웹하드에서 제공하고 있음. 게시물에 저화질이라는 안내가 되어 있는데, 갓 개봉하여 VOD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았던 시기에 극장에서 직접 캠으로 찍어 올린 영상임. 심의 일 현재는 VOD가 유통되고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2-20087호~2037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2-20087호~2037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20087호~2037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 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2-20305호~20378호는 보호원이 긴급대응 저작물로 지정하여 집중 모니터링 및 신속심의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임.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를 웹하드에서 30포인트에 판매 중임. 안전수 74개, 총 게시물수 100개가 아침 9시 기준으로 심의 접수되어 안전으로 추가되었으며 모두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안전번호 제2022-20087호~20378호의 신속 심의 대상을 확인 후 의견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검토의견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20087호~20378호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2-20075호~20076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2-20077호는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2-20078호~20086호는 시정권고를 가결하나,
안전번호 제2022-20078호~20079호는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2-20087호~2037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5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5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4. 21.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